

학교법인 동서학원 정관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목적) 이 법인은 대한민국의 교육이념에 입각하여 기독교 정신구현과 고등교육 및 유치원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77. 8. 26)('81.10.16)('83.10.20)

제 2 조(명칭) 이 법인은 학교법인 동서학원(東西學園) (이하 "법인" 이라 한다)이라 한다.('81.10.16)

제 3 조(설치학교)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설치·경영한다. '83.10.20)('92.11.13)('96.2.23)('01.12.11)('05.6.17)('08.12.3)

1. 동서대학교 ('91.12.27)('92.11.13)('96.2.23)
2. 부산디지털대학교 ('01.12.11)('05. 6.17)('08.12.3)
3. 경남정보전문대학(교명은 경남정보대학교이라 한다.) ('77. 8.26)('79. 1. 5)('85.1.16)('12.2.28)
4. 경남정보전문대학부속유치원(교명은 경남정보대학부속유치원이라 한다.)('12.2.28)

~~제 3 조의2(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01.12.11)('06.10.25)('08.12.3. 조문삭제)~~

제 4 조(주소) 이 법인의 사무소는 부산광역시 사상구 주례로 47(주례동)에 둔다.('81.10.16)('96. 2.23)

제 5 조(정관의 변경) 이 법인의 정관의 변경은 이사 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 의 의결을 거쳐 관할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학교법인 및 학교의 사무기구와 정원에 관련된 사항은 이사회 의결로 확정하고, 이를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81.10.16)('91. 1. 17)('08.5.21)

제 2 장 자산과 회계

제 1 절 자 산 ('81.10.16)('91.1.17)

제 6 조(자산의 구분) ① 이 법인의 자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되 기본재산은 교육용 기본재산과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81.10.16)

② 기본재산은 별지 목록의 재산과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 및 기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기본재산으로 정하는 재산으로 한다. ('81.10.16)

③ 보통재산은 제2항에서 정하는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91.1.17)

제 7 조(재산의 관리) ①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교환 또는 용도를 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81.10.16)(‘91.1.17)

②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운영과 관리에 관하여는 법령과 이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81.10.16)

제 8 조(경비와 유지방법) 이 법인의 경비는 기본재산에서 나는 과실과 수익사업의 수입과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81.10.16)(‘91.1.17)

제 2 절 회 계

제 9 조(회계의 구분) ① 이 법인의 회계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한다.

② 법인회계는 일반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할 수 있다. (‘81.10.16)(‘91.1.17)

③ 제1항의 학교에 속하는 회계는 당해 학교의 장이 집행하고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는 이사장이 집행한다. (‘81.10.16)

제 9 조의 2(예산·결산의 공개) 법인회계 및 학교회계의 예산·결산은 당해 학교 홈페이지에 1년간 공개하되,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5일 이전까지, 결산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81.10.16)(‘05.10.25)

제 10 조(예산외의 채무부담) 수지에산으로써 정한 이외의 의무부담 또는 권리포기는 이사의 의결을 거쳐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81.10.16)(‘83.10.20)(‘86.7.9)(‘91.1.17)(‘05.10.25)

제 11 조(세계 잉여금의 처리) 이 법인에 속하는 회계의 매년도 세계 잉여금은 차입금의 상환과 익년도에 이월 사용하는 분을 제외하고는 적립하여야 하며, 이 적립금은 기본재산으로 한다. (‘81.10.16)(‘91.1.17)

제 12 조(회계년도) 이 법인의 회계년도는 3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일까지로 한다.(‘81.10.16)

제 3 장 기 관

제 1 절 임 원

제 13 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이 법인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81.10.16)(‘95.3.13)(‘05.12.29)(‘06.11.21)(‘07.5.15)

1. 이사 8인 (이사장 1인 및 개방이사 2인 포함) 이내로 한다.
2. 감사 2인(추천감사 1인 포함) 이내로 한다.

제 14 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최초의 임원 반수의 임기는 그 임기의 반으로 한다. ('81.10.16)

1. 이사 4년(개방이사 포함)

2. 감사 3년(추천감사 포함)(*15.1.28)

② 보선에 의하여 취임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③ 감사의 임기는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제 15 조(임원의 선임방법) ('81.10.16)(*91.1.17)(*97.8.13)(*05.10.25)(*07.5.15)(*08.5.21)

① 이사와 감사는 이사회에서 이사정수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선임하여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 이 경우 임원의 성명, 나이, 임기, 현직 및 주요경력 등 인적사항을 학교 홈페이지에 상시 공개하여야 한다.

② 감사중 1인은 개방이사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에서 단수 추천한 인사를 선임한다.

③ 임원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2개월 이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④ 임원의 선임은 임기만료 2개월 전에 하여야 하며, 늦어도 임기개시 1개월 전에 관할청에 취임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⑤ 제2항의 감사 추천 등에 대하여는 제15조의 5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15 조의 2(상근임원) ('97.8.13)

① 법인에 상근하는 임원 2명을 둘 수 있으며,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상근하는 이사장, 상근이사의 보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사회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다.

제 15 조의 3(개방이사의 자격)이 법인의 개방이사는 기독교인(세례교인 이상)이어야 한다.(*06.11.21)

제 15 조의 4(개방이사의 정수) 이 법인의 개방이사의 수는 이사정수의 2인으로 한다.(*06.11.21)(*07.1.9)

제 15 조의 5(개방이사의 선임) ① 이사장은 개방이사의 선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재직이사의 경우 임기만료 3월 전)에 추천위원회에 개방이사 선임 대상자를 추천 요청하여야 한다.

② 법인은 개방이사 선임 대상자를 추천 요청할 때 정관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함께 제시할 수 있다.

③ 이사장으로부터 추천 요청을 받은 추천위원회는 30일 이내에 대상인원의 2배수를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동 기간 내에 추천이 없을 시에는 법인은 관할청에 추천을 요청한다.

제 15 조의 6(임원의 해임) 임기 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이사정수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임할 수 있다. 다만, 자진사퇴의 경우에는 보고사항으로 한다.

(*06.11.21)(*07.1.9)(*08.5.21)

1. 사립학교법 및 이 정관의 규정을 위반한 때
2. 관할청의 해임요구가 있을 때
3. 사립학교법시행령 제8조3에 의한 이 법인의 비공개 정보를 공개한 때.
4. 이 법인의 설립이념 및 교육목적을 변경 또는 중요 추진사업을 반대하기 위하여 교직원, 학생을 지도 선동하거나 이를 방조한 때
5. 학교의 장의 권한을 침해하거나 이를 방조한 때
6. 당해 법인 및 학교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야기하거나 이를 방조한 때.

제 16 조(임원선임의 제한) ('81.10.16)('86.7.9)('91.1.17)('91.12.27)('97.10.31)('99.8.20)('00.2.15)('05.10.25)('05.12.29)('06.11.21)

- ① 이사 정수의 반수 이상은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한다.
- ② 이사회 구성에 있어서 각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 정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이사 정수의 3분의 1 이상은 교육경험이 3년 이상 있는 자라야 한다.
- ④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있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
- ⑤ 제4항의 감사 추천 등에 대하여는 개방이사 추천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 ⑥ 이사는 제1조의 목적을 구현하기 위하여 기독교인으로 선임하여야 한다(세례교인 이상)
- ⑦ 이 법인의 건학이념(기독교정신구현) 및 교육목표에 동의하지 않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1. 관할청으로부터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자
 2. 사립학교 교원으로 재직중 파면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자
 3. 관할청의 요구에 의해 학교의 장에서 해임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자

제 17 조(이사장의 선출방법과 그 임기 등) ('81.10.16)('91.1.17)('05.10.25)('06.11.21)('07.5.15)

- ① 이사장은 이사정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취임한다.
- ② 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81.10.16)

제 18 조(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81.10.16)('86.7.9)

- ① 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리한다..
-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결정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 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 19 조(이사장 직무대행자 지정) ('81.10.16)

- ①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② 이사장이 궐위 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지명하는 이사가 직무를 대행한다.('81.10.16)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 직무 대행자로 지명된 이사는 지체 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 20 조(감사의 임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대행한다. ('81.10.16)

1. 법인의 재산상황과 회계를 감사하는 일
2. 이사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불비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때, 이를 이사회와 관할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를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법인의 재산상황과 회계 또는 이사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장 또는 이사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 21 조(임원의 겸직금지) ('81.10.16 신설)('06.11.21)('08.5.21)

- ① 이사는 감사 또는 학교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학교의 교원 기타 직원을 겸할 수 없다. 다만, 학교의 장은 예외로 한다.
- ② 감사는 이사장, 이사 또는 학교법인의 직원(당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교원 기타 직원을 포함한다)을 겸할 수 없다.('81.10.16 신설)
- ③ 이사장은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장을 겸할 수 없다.

제 2 절 이 사 회

제 22 조(이사회 구성 및 기능 등) ('81.10.16)('86.7.9)('91.1.17)('96.2.23)

- ① 이사회는 이사로서 구성한다.
- ②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학교법인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 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학교법인의 합병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5. 법인이 설치한 학교의 장 및 교원의 임면 및 교·직원 징계위원, 일반직원 재심위원 임명에 관한 사항('15.12.29)
 6. 법인이 설치한 학교의 경영에 관한 중요 사항
 7.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8. 기타 법령이나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③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 23 조(이사회회의 개최 및 의결정족수) ('75.10.29)('83.10.20)('06.11.21)('07.1.9)

-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가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최하지 못한다.
- ② 이사회회의 의사는 이 정관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정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24 조(이사회 의결 제척사유)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91.1.17)

- 1. 임원 및 학교의 장의 선임과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81.10.16)
-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임원 자신이 법인과 직접 관계되는 사항

제 25 조(이사회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이사장 또는 이사장 직무대행 이사가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81.10.16)

-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집합되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회의 개최를 요구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 25 조의 2(이사회 회의록의 공개) ('06.11.21)('08.5.21)('18.3.28)

- ① 이사회는 회의종결 후 10일 이내에 당해 회의록을 학교 홈페이지를 통하여 1년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이사회에서 사립학교법시행령 제8조의2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하기로 의결한 사항은 이를 공개하지 아니한다.
- ② 제1항의 단서에 따라 이사회 회의록을 공개하지 아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이사회에서 회의록의 공개여부 및 공개범위 등을 의결하여야 한다.

제 26 조(이사회 소집특례) ('81.10.16)('91.1.17)('06.11.21)('07.1.9)

-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 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7일 이내에 회의소집 통지를 하여야 한다.
 - 1. 재적이사 반수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2. 제20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81.10.16)
-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이상 회의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동으로 이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소집권자가 이사회회의 소집을 기피한 경우에는 관할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4 장 수익사업

제 27 조(수익사업의 종류) 이 법인이 설치하여 유지 경영하는 학교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한다. (*79.1.5)(*83.10.20)(*86.7.9)(*91.12.27)(*96.7.8)(*00.2.15)(*05.10.25)(*09.3.4)(*11.11.16)

1. 서적출판업(*79.1.5)
2. 농산업·임업 (*79.1.5)(*81.10.16)(*09.3.4)
3. 부동산 임대업 및 부수사업
4. 투자사업
5. 판매사업
6. 의료사업
7. 영상물제작 및 관련사업
8. 주차장업 및 관련사업
9. 일반학원업
- 10.부동산 개발 및 임대사업
- 11.부동산 매매 및 주택공급업

제 28 조(수익사업의 명칭) 제27조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민석문화사, 진영농장, 사천농장, DS빌딩, 동서제이드, 동서빌딩, 파크타워, 민석빌딩을 경영한다.

(*81.10.16)(*86.7.9)(*91.1.17)(*93.6.17)(*96.2.23)(*96.7.8)(*99.2.19)(*00.2.15)(*04.2.25)(*05.6.17)(*07.1.9)(*08.12.3)(*13.10.30)(*13.12.04)

제 29 조(수익사업체의 주소) 제28조의 사업소는 다음에 둔다.

1. 민석문화사 - 부산광역시 사상구 주례로 47(주례동)
2. 진영농장 - 경남 김해시 진영읍 하계리 441-3번지
3. 사천농장 - 경남 사천시 곤명면 초량리 산75-1번지
4. D S 빌딩 -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상로 181(괘법동)(*12.08.07)
5. 동서제이드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763번지(경동제이드 101동 1202호)(*13.10.30)
6. 동서빌딩 - 부산광역시 사상구 가야대로 370(주례동)
7. 파크타워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새싹로 30(부전동)(*12.08.07)(*12.08.07)
8. 민석빌딩 - 부산광역시 남구 수영로 233(대연동)(*13.12.04)

제 30 조(관리인) ① 제28조에 규정된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둔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인의 임용, 복무, 보수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정한다.

제 5 장 해 산

제 31 조(해산)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 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관할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08.5.21)

제 32 조(잔여재산의 귀속) 이 법인을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재산은 합병 및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할청에 대한 청산종결의 신고가 종료된 후 다른 학교법인이나 기타 교육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귀속된다. ('81.10.16)('08.5.21)

제 33 조(청산인) 이 법인이 해산한 때에는 청산인은 해산 당시의 이사중에서 선출한다.

제 6 장 교 직 원

제 1 절 교 원

제 1 관 임 명

제 34 조(임면) ① 이 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학교의 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면하되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

('79.1.5)('86.7.9)('91.1.17)('91.12.27)('92.11.13)('97.8.13)('97.10.31)('01.12.11)('02.12.30)('04.2.25)('05.6.17)('05.10.25)('06.11.21)('07.1.9)('08.5.21)('08.12.3)('15.12.29)

② 학교의 장 이외의 대학교육기관의 전임교원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면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범위 안에서 계약조건을 정하여 임명하되 정년보장 교원임용을 위한 심사위원회를 대학에 두며 심사위원회 규정은 따로 정한다. 그러나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얻어 체결한 계약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15.12.29)

③ 대학교육기관의 장에 대하여 그 임기 중에 해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근무기간

가. 교 수 : 정년까지의 기간. 다만,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

나. 부 교 수 :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 또는 정년까지의 기간.

다. 조 교 수 :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

라. 전임강사<삭제>('12.7.20)

2. 급여

정관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정한다.

3. 근무조건

교수시간 및 소속학부(과) 등에 관한 사항

4. 업적 및 성과

연구실적, 논문지도, 진로상담 및 학생지도 등에 관한 사항

5. 재계약 조건 및 절차

근무기간 종료후 다시 임용되는 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

6. 그밖에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④ 조교는 해당 부서장의 제청으로 당해 학교의 장이 임면하며 근무기간은 1년으로 한다.
- ⑤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02년 1월 1일 현재 재직중인 교원으로서 임용기간 종료 후 다시 임용되는 교원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과 절차에 따라 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한다. 다만,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1. 근무기간

- 가. 교 수 : 정년까지의 기간
- 나. 부 교 수 : 6년 또는 정년까지의 기간
- 다. 조 교 수 : 4년 또는 6년('12.7.20)
- 라. 전임강사 : 2년<삭제>('12.7.20)

2. 재임용심사

재임용심사에 관한 사항

3. 교원업적평가

교원업적평가에 관한 사항

- ⑥ 제1항 내지 제2항 이외의 교원은 당해 학교의 장이 임면한다.('15.12.29)
- ⑦ 대학교육기관의 교원의 보직은 학교의 장의 제청을 받아 이사장이 보한다.
- ⑧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면권자가 교원을 임면하였을 때에는 임면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34 조의 2(임시교원) ('91.1.17)

- ① 교원이 직무를 이탈하여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 할 때에는 그 기간 중 당해 교원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임시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 ② 임시교원은 임용기간이 만료되면 당연히 퇴직된다.

제 34 조의 3(객원교수) 해외 및 국내 우수한 교육기관, 연구기관 또는 공공기관에서 교육경력을 쌓은 저명한 학자 및 산업체의 특정 전문분야에서 많은 경험과 탁월한 연구업적을 쌓은 자를 객원교수로 초빙할 수 있다. ('96.2.23)

제 34 조의 4(겸임교원) 산업연계 교육의 활성화 및 심화를 위하여 국가기관, 연구기관, 공공단체 또는 산업체근무자중 고등교육법이 정하는 대학교원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대학에서 강의하는 과목과 직무내용 및 전공이 유사한 자를 임용할 수 있다.

('94.11.4)('96.2.23)('97.8.13)('98.4.1)('15.12.29)

제 34 조의 5(명예교수)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15년이상 재직하고 퇴직당시 총장, 학장 또는 교수로 있던 자로서 교육면과 학술면에 있어 업적이 뛰어나고 다른 교원의 모범이 되며 재직중 연구업적과 학교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명예교수로 추대할 수 있다. ('94.11.04)('12.07.20)

제 34 조의 6(대우교수) 교수자격 기준에 합당하며 연구 및 교육경력이 있는자로서 학교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인정되는 학위과정중인 자를 대우교수로 임용하여 전공분야를 계속 연구토록 할 수 있다. ('94.11.4)

제 34 조의 7(외국인 교원) 외국인으로서 (E-1, E-2로 입국자격을 가진자) 고등교육법에 규정한 교수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자. ('94.11.4)('98.4.1)

제 34 조의 8(기금교원) ('98. 4. 1)

① 우수한 연구 인력 및 각종 사회경험자를 대학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에 의하여 교육 및 연구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② 기금교원의 봉급은 대학에 조성된 발전기금의 과실로 월정액을 지급하며, 계약기간은 2년으로 한다.

제 34 조의 9(연구교원) 학부, 부속연구기관 또는 부속기관의 연구사업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 계약에 의하여 교육 및 연구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01.12.11)

제 34 조의 10(초빙교원) 교육 또는 산업체 경력과 연구 실적이 현저한 자로서 수업에 책임자로 인정되는 경우 계약에 의하여 강의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94.11.4)('01.12.11)('02.12.30)

제 34 조의 11(특임교원) 학교의 장은 이외에도 대외협력전담교수, 국제교류전담교수, 강의전담교수, 산학협력전담교수, 연구전담교수를 임용 또는 위촉하여 각각의 목적별 임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01.12.11)('12. 09. 28)

제 34 조의 12(석좌교수) 특정 학문분야에서의 업적이 탁월하거나, 사회분야에서의 공적이 국내 및 국제적으로 명성이 있는 인사를 석좌교수로 초빙할 수 있다.

제 34 조의 13(산학협력중점교수) 산학협력을 통한 교육, 연구, 창업·취업 지원활동을 중점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산학협력중점교수를 임용 또는 위촉할 수 있다.('12.2.28)

제 2 관 신분보장

제 35 조(휴직의 사유) 교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당해 교원의 임면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4호의 경우에는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75.10.29)('77.8.26)('81.10.16)('83.10.20)('91.1.17)('97.10.31)('08.5.21)('17.12.28)('18.3.28)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의 휴양을 요할 때.

(불임·남임으로 인하여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를 포함한다.)

2.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 복무를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
 3. 천재·지변 또는 전시·사변이나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하게 된 때.
 4.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된 때.
 5.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해외유학을 하거나 외국에서 1년 이상 연구 또는 연수하게 된 때.
 6. 국제기구, 외국기관, 국내외의 대학·연구소·연구기관 다른 국가기관, 재외교육기관 또는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9조의 3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기관에 임시로 고용된 때.(18.03.28)
 7.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교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17.12.28)
- 7의2. 만19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제7호에 따른 육아 휴직의 대상이 되는 아동은 제외한다)을 입양(入養)하는 경우(17.12.28)
8. 관할청이 지정하는 국내의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때.
 9.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장기간의 요양을 요하는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 부모의 간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
 10. 배우자가 국외근무를 하게 되거나 제5호에 해당하게 된 때.

제 36 조(휴직의 기간) 교원의 휴직기간은 다음과 같다.(75.10.29)(91.1.17)(97.10.31)(07.1.9)(08.5.21)

1. 제35조 제1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2. 제35조 제2호 및 제4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그 복무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로 한다.
 3. 제35조 제3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3월 이내로 한다.
 4. 제35조 제5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5. 제35조 제6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그 고용기간으로 한다.
 6. 제35조 제7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은 자녀 1명에 대하여 3년 이내로 하되 분할하여 휴직할 수 있다.(17.12.28)
- 6의2. 제35조 제7의2의 사유로 인한 휴직은 입양자녀 1명에 대하여 6개월 이내로 한다.
(17.12.28)
7. 제35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8. 제35조 제9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재직기간 중 총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9. 제35조 제10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제 37 조(휴직교원의 신분) (91.1.17)(07.1.9)

- ① 휴직중의 교원은 신분을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 ② 휴직기간중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 ③ 제35조 제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직기간이 만료된 교원이 30일 이내에 복귀를 신

고한 때에는 당연히 복직된다.

제 38 조(휴직교원의 처우) ('91.1.17)(07.1.9)(16.3.28)

① ~~제35조 제1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교원에 대하여는 그 휴직기간중 봉급의 반액을 지급한다. 다만, 결핵성 질환으로 인한 휴직의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 중 봉급의 8할을 지급한다.~~(16.3.28)

① 신체상·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을 위하여 휴직한 교원에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봉급의 일부를 지원한다. 다만, 공무상 질병으로 휴직한 경우에는 그 기간 중 봉급 전액을 지급한다. (16.3.28)

1. 휴직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 : 봉급의 70퍼센트(16.3.28)

2. 휴직 기간이 1년 초과 2년 이하인 경우: 봉급의 50퍼센트.(16.3.28)

② ~~제35조 제2호 내지 제4호와 제6호 내지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교원에 대하여는 봉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5.12.29)

② 외국유학 또는 1년 이상의 국외연수를 위하여 휴직한 교원에게는 그 기간 중 봉급의 50퍼센트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되지 않은 휴직의 경우에는 봉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6.3.28)

제 39 조(직위해제 및 해임) ('75.10.29)(77.8.26)(91.1.17)(94.11.4)

①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교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다.

② 임면권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교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 할 수 있다.

1.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또는 교원으로서 근무 태도가 심히 불성실한 자

2.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임면권자는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가 해제된 자에 대하여는 봉급의 8할을 지급한다. 다만 제1항 또는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 해제된 자가 직위 해제일로 부터 3월이 경과하여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할 때에는 그 3월이 경과한 이후의 기간 중에는 봉급의 5할을 지급한다.

⑤ 임면권자는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직위 해제된 자에 대하여 3월 이내의 기간대기를 명한다.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명령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임면권자는 능력회복이나 태도 개선을 위한 교육훈련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의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 제2항 제1호와 제2호 또는 제1항의 직위해제 사유가 경합하는 때에는 제2항 제2호 또는 제1항의 직위해제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⑧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명령을 받은 자가 그 기간중 능력의 향상 또는 개전의 정
이없다고 인정된 때에는 임면권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면직시킬 수 있다.

제 40 조(보수) 교원의 보수는 자격과 경력 및 직무의 곤난성과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이사회의 의
결을 거쳐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77.8.26)(‘86.7.9)

제 40 조의 2(정년) ① 교원의 정년은 만65세로 한다. 단, 학교장의 정년은 예외로 한다.

② 정년이 달한 교원은 그 정년이 달한 날이 속하는 학기의 말일에 당연히 퇴직한다.

제 41 조(의사에 반한 휴직, 면직등의 금지) ① 교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사립학교법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또는 면직등 부당한 처분을
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학급, 학과의 개폐에 의하여 폐직이나 감원이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교원은 권고에 의하여 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③ 교원은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재심
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제 41 조의 2(후임자 보충발령의 유예) 교원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파면 또는 해임되거나 근무
성적 불량으로 면직 되었을 때에는 그 처분한 날로 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의 발령을 하
지 못한다.(‘91.1.17)

제 41 조의 3(명예퇴직) ①교직원으로서 20년이상 근속한 자가 정년 전에 자진하여 퇴직하는 경
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명예퇴직을 허가 할 수 있다.

②명예퇴직수당의 지급범위, 지급액, 지급절차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
다.

제 3 관 교원인사위원회

제 42 조(교원인사위원회 설치) 교원(학교의 장을 제외한다)의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당해 학교(유치원은 제외한다)에 교원인사위원회 (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
를 둔다. (‘79.1.5)(‘91.12.27)

제 43 조(인사위원회 기능) (‘91.1.17)(‘91.12.27)(‘92.11.13)(‘96.2.23)(‘97.8.13)(‘01.12.11)(‘04.2.25)(‘05.6.17)(‘05.10.25)(‘07.1.9)(‘08.12.3)

①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대학교육기관의 장이 교수, 부교수, 조교수를 임면 제청하고자 할 때의 임면 제청 동의
에 관한 사항.(‘12.07.20)

2.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요하거나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인사위원회가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교원에 대하여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임명 제청의 동의를 할 때에는 학교별 승진 및 재임용 사정세칙을
적용한다.

제 44 조(인사위원회 조직) (‘91.1.17)(‘91.12.27)(‘92.11.13)(‘06.11.21)

① 인사위원회는 학교별로 학교의 장이 임명하는 7인 이내의 교원으로 조직한다.

② 인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 이내로 하되 중임 할 수 있다.

제 45 조(인사위원회의 위원장 및 직무) ('91.1.17)('91.12.27)('02.12.30)

①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당해 학교의 장이 임명한다. 다만, 대학교육기관의 경우에는 교무(학)처장이 위원장이 된다.

②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

③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④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46 조(인사위원회의 회의소집 등) ('91.12.27)

①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학교의 장의 요청이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인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47 조(회의록 작성) ('91.12.27)('96.2.23)

① 인사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당해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이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제 48 조(인사위원회의 간사 등) ('91.1.17)

① 인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

② 간사와 서기는 당해 학교의 교직원 중에서 학교의 장이 임명한다.

제 49 조(운영세칙) 인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당해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이를 정한다.

제 2 절 교원징계위원회

제 50 조(교원징계위원회의 조직) ('83.10.20)('91.1.17)('91.12.27)('16.8.26)

① 교원징계위원회는 5인의 위원으로 조직한다.

②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해당학교의 교원 또는 학교법인의 이사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이 법인에 속하지 아니한 자로, 이사장의 추천을 받은 1인(이하 '외부위원'이라 한다)

가.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대학에서 법학, 행정학 또는 교육학을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다.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

라. 그 밖에 교육이나 교육행정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③ 학교법인의 이사인 위원의 수가 위원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외부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 51 조(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 선출및 직무) ①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②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

③ 교원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52 조(징계의결의 기한)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 요구를 받은 때에는 그 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의 범위 안에서 1차에 한하여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 53 조(제척사유) 교원징계위원회 위원은 그 자신에 관한 징계사건을 심리하거나 피징계자와 친족관계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사건의 심리에 관여하지 못한다.

제 53 조의 2(위인의 기피 등) (‘91.1.17)(‘07.1. 9)

① 징계대상자는 교원징계 위원회의 위원이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 신청이 있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을 받은 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제척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로 교원징계위원회의 출석 위원이 재적위원의 3분의 2에 미달되어 징계사건을 심리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의 수가 재적위원 수의 3분의 2이상 될 수 있도록 위원의 임명권자에게 임시위원의 임명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 53 조의 3(징계의결 요구사유 통지) 교원의 임면권자가 교원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할 때에는 징계의결 요구와 동시에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사유를 기재한 설명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91.1.17)

제 54 조(진상조사 및 의견의 개진) ①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리함에 있어서 진상을 조사하여야 하며, 징계의결을 행하기 전에 본인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다만, 2회이상 서면으로 소환하여도 불응한 때에는 그 사실을 기록에 명시하고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② 교원징계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 55 조(징계의결) (‘91.1.17)(‘91.12.27)(‘00.2.15)

① 징계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행하여야 한다.

②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리하고, 징계를 의결한 때에는 주문과 사유를 기록한 징계의결서를 작성하고 이를 임면권자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③ 임면권자가 제2항의 통고를 받은 때에는 그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의결 내용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임면권자가 법인인 때에는 징계처분권을 이사장에게 위임한다.

④ 징계처분권자는 징계처분의 사유를 기재한 결정서를 당해 교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⑤ 교원징계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 56 조(징계의결서의 정상참작 등)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징계대상자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개전의 정, 징계요구의 내용, 기타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

제 56 조의 2(징계사유의 시효) 교원징계 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 (‘91.1.17)(‘07.5.15)(‘08.12. 3)

제 57 조(교원징계위원회의 간사 등) (‘91.1.17)

① 교원징계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

② 간사와 서기는 교원징계위원회가 설치된 당해기관 소속직원 중에서 그 임명권자가 임명한다.

제 58 조(운영세칙) 교원징계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당해 교원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 3 절 사무직원

제 59 조(자격) (‘77.8.26)(‘91.12.27)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사무직원으로 임명될 수 없다.(‘14.02.28)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이 법인과 이 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학교에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와 해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② 일반직원의 신규임용에 있어서는 학력에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다만, 일반직(기술,사서) 및 일반직(관리운영)은 임용될 직종에 관한 자격증, 면허증, 기타 임용권자가 필요로 하는 자격이 있는 자를 인사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임용할 수 있다.(‘14.02.28)
- ③ 재직중인 일반직원이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게 될 때에는 당연 퇴직한다.

제 60 조(임용) (‘91.12.27)(‘92.11.13)

- ① 일반직원의 신규임용, 승진, 승급, 전직, 전보, 강임, 휴직, 직위해제, 복직, 면직, 해임 및 파면(이하 “임용”이라 한다)은 임용권자가 공개채용, 전형 또는 근무성적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77.8.26)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용에 있어서 그 시험과목, 방법, 절차등에 관하여는 따로 인사규칙으로 정한다.
- ③ 일반직원은 이사장이 임용하되, 학교소속 일반직원은 당해 학교의 장의 제청이 있어야 한다.
- ④ 일반직원의 보직은 당해 학교의 장의 제청을 받아 이사장이 보한다.

제 61 조(복무) 일반직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77.8.26)(‘91.12.27)

제 62 조(보수) 일반직원의 보수는 일반의 표준생계비 및 민간인의 임금 등을 고려하여 직무의 난이성 및 책임의 정도에 따라 적당하도록 직급 및 근속기간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인사규칙으로 정한다. (‘77.8.26)(‘91.12.27)

제 63 조(신분보장) 일반직원의 신분보장에 관하여는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77.8.26)(‘91.12.27)

제 64 조(징계 및 재심청구) (‘77.8.26)(‘91.12.27)

- ① 일반직원의 징계는 동서학원 일반직원 징계위원회 규정에 의하여 처리하되 일반직원 징계위원회는 법인에 따로 둔다.
- ② 일반직원의 재심청구를 위하여 법인에 일반직원재심위원회를 두되, 그 조직 및 운영등에 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77.8.26)

제 7 장 직 제

제 1 절 법 인

제 65 조(법인사무조직) (‘77.8.26)(‘91.1.17)(‘91.12.27)(‘92.11.13)(‘97.8.13)(‘05.12.29)

- ① 이 법인의 업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법인에 사무국과 사업본부를 두며 국장 및 사업본부장은 참여 또는 부참여로 보한다.

- ② 법인 사무국에는 관리팀, 인사팀을 두고, 사업본부에는 사업팀, 업무팀을 두며 각 실장은 참사 또는 부참사로 보하며, 그 부서에는 업무분장에 따라 팀장과 담당역을 둘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 2 절 대 학 교

제 66 조(총장 등) ('91.12.27)('92.11.13)('04.2.25)('05.12.29)('06.11.21)

- ① 대학교에 총장을 둔다.
- ② 총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대학교를 대표한다.
- ③ 대학교에 3인 이내의 부총장을 둘 수 있으며, 교수 또는 부교수로 겸보한다.
- ④ 부총장은 총장을 보좌하며, 총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총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 67 조(학부장, 학장, 부학장, 대학원장, 부원장)('96.2.23)('99.2.19)('15.1.28)

- ① 각 학부에 학부장을, 단과대학에 학장 및 부학장을, 대학원에 대학원장 및 부원장을 둘 수 있다.('15.1.28)
- ② 학부장, 학장 및 대학원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로 겸보하며, 부학장 및 부원장은 조교수 이상으로 겸보한다.('15.1.28)
- ③ 대학원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대학원의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한다.

제 68 조(하부조직)

('91.12.27)('92.11.13)('96.2.23)('98.4.1)('99.2.19)('00.2.15)('01.12.11)('02.12.30)('04.2.25)('05.6.17)('05.10.25)('06.11.21)('14.02.28)('15.1.28)('15.8.13)

- ① 대학교에 교무처, 기획연구처, 학생취업복지처, 인사평가처, 입시관리처, 국제협력처, 창의인재육성처, 종합행정처를 두며, 총장 직속으로 교목실, 총장실, 재무본부, 건설본부, 종합홍보실, 미래전략실을 둔다.
- ② 교목실장은 목사자격을 갖춘 부교수이상으로 보하며, 교무처장, 기획연구처장, 학생처장, 인사평가처장, 입시관리처장, 국제협력처장, 창의인재육성처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로 보하며, 종합행정처장 및 재무본부장은 부교수이상 교원 또는 부참사 이상으로 보하며, 건설본부장은 부교수이상 교원, 일정자격을 갖춘 비전임 교원 또는 부참사 이상 직원으로 보하며, 종합홍보실장 및 미래전략실장은 조교수이상 교원 또는 부참사 이상으로 보한다.
- ③ 각 부서에는 필요에 따라 조교수이상의 교원 또는 7급 이상의 직원으로 실장, 부실장,

부처장, 원장, 센터장 및 부소장을 둘 수 있다.

④ 각 부서에는 업무분장에 따라 팀제와 담당역을 둘 수 있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 68 조의 2(대학원의 하부조직) ('96.2.23)(‘98.4.1)(‘02.12.30)(‘04.2.25)

① 대학원에는 교학부를 둔다.

② 대학원의 교학부장은 조교수이상 교원으로 겸보한다.

③ 대학원에는 업무분장에 따라 담당역을 둘 수 있다.

제 69 조(부속시설) ('91.12.27)(‘92.11.13)

① 대학교에는 필요한 부속시설을 둘 수 있다.

② 부속시설에 각각 장을 두며, 부속시설의 장은 조교수이상의 교원 또는 참사이상으로 보한다.

③ 부속시설의 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시설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④ 부속시설에 필요한 부서를 둘 수 있으며, 부서장은 일반직 또는 교원으로 보하되, 그 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 70 조(동서대학교 산학협력단) ('04.2.25)

①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동서대학교 산학협력단을 설치 운영한다.

② 동서대학교 산학협력단 직제에 관한 사항은 동서대학교 산학협력단 정관 및 운영규정에 따른다.

제 70 조의 2(학교기업)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의하여 학교기업을 설치 운영한다. ('05.6.17)

제 70 조의 3(수탁기관운영)①현장교육기회의 확대와 지역사회봉사 등을 위하여 교육·복지 관련 기관 및 시설(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을 수탁 운영할 수 있다.(‘11.12.27)

②수탁기관의 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겸보하거나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를 계약임용 할 수 있으며, 기타 수탁기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교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11.12.27)

제 3 절 사이버대학교

제 71 조(총장 등) ('01.12.11)(‘04. 2.25)(‘05.10.25)(‘05.12.29)(‘08.12.3)(‘14.02.28)

① 사이버대학교에 총장을 둔다.

② 총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대학을 대표한다.

③ 사이버대학교에 부총장을 둘 수 있으며, 부교수이상의 교원 또는 2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임할 수 있다.

④ 부총장은 총장을 보좌하며, 총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총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 71 조의 2(학부장, 대학원장) ① 각 학부에 학부장을 두며, 대학원에 대학원장을 둔다.(‘12.11.23)

② 학부장, 대학원장은 조교수이상으로 보한다.

③ 대학원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대학원의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한다.

제 72 조(하부조직) (‘01.12.11)(‘04. 2.25)(‘05.10.25)(‘05.12.29)(‘08.12.3)(‘10.8.6)(‘14.02.28)(‘14.08.26)(‘16.8.26)(‘18.3.28)(‘18.8.30)

① 사이버대학교에 기획처, 교무처, 입학홍보처, 온라인교육지원처, 행정실을 두며, 총장직속으로 교목실, 대외협력실을 둔다.

② 교무처장, 입학홍보처장, 기획처장, 온라인교육지원처장은 조교수이상의 교원으로 보하고, 실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7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하며, 각 부서에는 교원 또는 직원으로 부처장, 부센터장을 둘 수 있다.

③ 각 부서에는 업무분장에 따라 팀제와 담당역을 둘 수 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 72 조의 2(대학원의 하부조직)(‘12.11.23)

① 대학원에는 교학팀을 둔다.

② 대학원의 교학팀장은 대학원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대학원 업무를 총괄한다.

③ 대학원에는 업무분장에 따라 담당역을 둘 수 있다.

제 73 조(부속시설) (‘01.12.11)(‘05.10.25)(‘05.12.29)(‘08.12.3)(‘10.8. 6)

① 사이버대학교에는 필요한 부속시설을 둘 수 있다.

② 부속시설에 각각 장을 두며 부속시설의 장은 조교수이상의 교원으로 겸보한다.(‘12.07.20)

③ 부속시설의 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시설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④ 부속시설에 필요한 부서를 둘 수 있으며, 부서장은 일반직 또는 교원으로 보하되 그 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⑤ <삭제>(2011. 8. 30)

제 74 조(전자도서관) 사이버대학교에 전자도서관을 둔다. (‘01.12.11)(‘05.10.25)(‘08.12.3)

제 74 조의 2(부산디지털대학교 산학협력단) (‘15.12.29)

①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부산디지털대학교 산학협력단을 설치 운영한다.(‘15.12.29)

② 부산디지털대학교 산학협력단 직제에 관한 사항은 부산디지털대학교 산학협력단 정관 및 운영규정에 따른다.(‘15.12.29)

제 4 절 전문대학

제 75 조(총장 등) (‘77.8.26)(‘91.12.27)(‘01.12.11)(‘02.12.30)(‘04.2.25)(‘05.12.29)(‘09. 3. 4)

- ① 전문대학에 총장을 둔다.
- ② 총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대학을 대표한다.
- ③ 전문대학에 2인 이내의 부총장을 둘 수 있으며, 교수 또는 부교수로 겸보한다.
- ④ 부총장은 총장을 보좌하며, 총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총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 76 조(하부조직) (‘77.8.26)(‘91.12.27)(‘92.11.13)(‘94.3.24)(‘96.2.23)(‘96.7.8)(‘97.8.13)(‘98.4.1)(‘00.2.15)(‘01.12.11)(‘02.12.30)(‘04.2.25)(‘05.6.17)(‘05.12.29)(‘09. 3. 4)(2011. 8. 30)(‘11.9.29)(‘13.2.07)(‘14.02.28)(‘14.08.26)(‘16.3.28)(‘16.8.26)(‘17.8.29)(‘18.3.28)

- ① 전문대학에 교목실, 기획홍보처, 교무처, 학생처, 취업진로처, 입시관리처, 종합행정처, 건설본부, 재무본부, 대외협력실, KIT사랑의봉사센터를 둔다.
- ② 교목실장은 교목으로 보하며, 교무처장, 학생처장, 취업진로처장, 입시관리처장, 건설본부장, KIT사랑의봉사센터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하고, 기획홍보처장, 종합행정처장, 재무본부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일반직(사무) 참사 이상으로 보하며, 홍보실장, 대외협력실장 및 산업단지캠퍼스지원사업단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일반직(사무) 부참사 이상으로 보한다.(‘16.3.28)
- ③ 각 부서에는 필요에 따라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일반직(사무) 부참사 이상으로 부처장, 실장 및 센터장을 보할 수 있다.
- ④ 종합행정처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참사 이상으로 보한다.
- ⑤ 각 부서에는 업무분장에 따라 팀제와 담당역을 둘 수 있다.
- ⑥ 제1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 77 조(부속시설) ① 전문대학에는 필요한 부속시설을 둘 수 있다.

- ② 부속시설에 각각 장을 두며, 부속시설의 장은 조교수이상의 교원으로 겸보한다.(‘12.07.20)
- ③ 부속시설의 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시설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④ 부속시설에 필요한 부서를 둘 수 있으며, 부서장은 일반직(사무) 또는 교원으로 보하되 그 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14.02.28)

제 78 조(도서관) (‘92.11.13)(‘96.7.8)(‘98.4.1)(‘99.8.20)(‘01.12.11)(‘02.12.30)

① 도서관에는 도서관장을 두며, 도서관장은 조교수이상의 교원으로 보한다.

② 도서관에는 업무분장에 따라 팀제와 담당역을 둘 수 있으며 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 78 조의 2(정보통신센터) (‘98.4.1)(‘99. 2.19)(‘99.8.30)(‘02.12.30)(‘13.2.07)(‘14.02.28)

① 정보통신센터에는 센터장을 두며, 센터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일반직(사무) 부참사 이상으로 보한다.

② 정보통신센터에는 업무분장에 따라 팀제와 담당역을 둘 수 있으며 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 78 조의 3(경남정보대학교 산학협력단) (‘04.2.25)(‘12.2.28)

①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경남정보대학교 산학협력단을 설치 운영한다.

② 경남정보대학교 산학협력단 직제에 관한 사항은 경남정보대학교 산학협력단 정관 및 운영 규정에 따른다.

제 78 조의 4(학교기업)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의하여 학교기업을 설치 운영한다. (‘05.6.17)

~~제 78 조의 5(센텀산학캠퍼스) (‘11.9.29)(‘12.3.29)(‘13.2.07)~~

제 5 절 유 치 원

제 79 조(원장 등) (‘83.10.20)(‘91.1.17)(‘91.12.27)(01.12.11)

① 유치원에 원장과 원감 1인을 둔다.

② 원장은 원무를 통할하고 소속 직원을 감독하며, 원아를 보육한다.

③ 원감은 원장의 명을 받아 원무를 정리하며, 원아를 보육하고 원장 유고시에는 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④유치원에는 서무팀을 두며 팀장과 담당역을 둘 수 있으며, 팀장은 부주사 이상으로 보하고, 그 분장업무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 6 절 정 원

제 80 조(정원) 법인 및 각급 학교에 두는 일반직원의 정원은 각각 별표#1. 2. 3. 4. 5와 같다.

(*77. 8.26)(*83.10.20)(*01.12.11)(*11.8.30)(*12.09.29)(*14.02.28)(*16.03.28)

제 8 장 대학평의원회 ('06.11.21)('07.1.9)('08.5.21)('08.12.3)('18.03.28)

제 81 조(대학평의원회의 설치) 대학교 및 사이버대학교, 전문대학에는 교육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평의원회(이하 '평의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 82 조(평의원회의 구성) ① 평의원회는 교원·직원 및 학생을 대표할 수 있는 자, 그리고 건학이념을 구현할 수 있는 자 중에서 학교의 장이 위촉하는 11인의 평의원으로 구성하며, 각 구성단위의 정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원 4인('18.03.28)

2. 직원 3인

3. 학생 2인('18.03.28)

4. 건학이념을 구현할 수 있는 자 2인

② 평의원회 구성에 있어서 제 1항의 각 구성단위 중 어느 한 단위에 속하는 평의원 수가 평의원 정수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제 83 조(평의원의 위촉 및 운영규정) 평의원의 추천방법 및 절차와 평의원회의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제 84 조(평의원회 의장 등) ① 평의원회에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둔다.

② 의장은 평의원 중에서 정교수 직급을 가진 자 중 평의원이 복수로 추천하는 인사 중 1인을 학교의 장이 임명한다.

③ 의장은 평의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하고, 법인의 협의체 구성시 평의원회의 대표자가 된다.

④ 부의장은 평의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고 의장 유고시에 이를 대리한다.

제 85 조(평의원의 임기) ① 평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가능하다. 단, 제82조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평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② 보선평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 86 조(평의원회의 기능) 평의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제3호 내지 제4호의 경우 자문에 한한다.

1. 학교의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2.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3. 대학헌장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4. 대학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대학의 예·결산에 관한 사항

6. 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

7. 그 밖의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써 학교의 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 87 조(추천위원회의 구성) ① 추천위원회는 동서대학교 대학평의원회에 두고, 위원 5인으로 하며, 그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인이사회에서 추천하는 자 2인
2. 동서대학교와 부산디지털대학교, 경남정보대학교의 대학평의회에서 협의하여 추천하는 자 3인('12.2.28)
- ② 추천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 ③ 그 밖의 추천위원회 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추천위원회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 88 조(운영규정) 평의회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교의 장이 따로 정한다.

제9장 유치원운영위원회('12.09.28)

제 89 조 (유치원운영위원회 설치) 유아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의5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22조의12 제5항에 따라 경남정보대학부속유치원에 유치원운영위원회를 둔다.('12.09.28)

제 90 조(위원정수 및 비율) 위원의 정수 및 구성비율은 다음과 같이 한다.('12.09.28)

- ① 위원의 정수는 9명으로 한다.
- ② 위원별 정수와 구성비율은 각각 학부모위원 6명, 교원위원 3명으로 한다.

제 91 조(위원의 자격) ① 학부모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12.09.28)

② 학부모위원은 본 유치원에 자녀가 있는 학부모이어야 하며, 교원위원은 본 유치원에 재직하는 정규교원이어야 한다.

③ 위원은 다른 유치원 및 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

제 92 조(선출관리위원회) ①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의 선출에 따른 업무처리를 위하여 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12.09.28)

② 위원장은 유치원장으로 하고 교직원 1명, 학부모대표 1명으로 구성하되, 학부모대표는 학부모위원 선출에만 관여한다.

③ 선출관리위원회는 입후보자 등록, 선거홍보, 투·개표 및 당선자 공고 등의 선거사무를 담당한다.

④ 선출관리위원이 운영위원의 후보가 되고자 할 때는 위원직을 사퇴하여야 한다.

제 93 조(위원의 선출) ①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임기만료일 10일 이전까지 선출한다.('12.09.28)

② 학부모위원은 학부모 중에서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한다.

③ 당연직 교원위원인 유치원장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직원전체회의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유치원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의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보궐선출하고,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남은 임기가 6월 미만으로서 위원정수의 4분의 1 이상의 결원이 생기지 아니한 때에

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 94 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은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12.09.28)

② 위원은 임기개시일은 4월 1일로 한다.

제 95 조(위원의 의무) ①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서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2.09.28)

②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유치원 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해당 유치원과의 거래 등을 통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알선을 해서는 아니 된다.

④ 학부모위원에게는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 외의 다른 비용을 강요해서는 아니 된다.

제 96 조(위원의 자격상실)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자격을 상실한다.(‘12.09.28)

1. 학부모위원은 자녀가 졸업하거나 다른 유치원으로 옮겼을 때

2. 교원위원이 소속 유치원을 달리 하였을 때

3. 특별한 사유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하였을 때

4. 위원 선출 시 본인이 제출한 신상자료, 학력, 경력 등 주요내용에 허위 사실이 발견 되었을 때

5. 제95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자격상실을 의결한 경우

제 97 조(위원장 및 부위원장) ① 운영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12.09.28)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③ 제2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여 최고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이 경우, 최고 득표자가 2명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진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임기 중에 궐위된 때에는 보궐 선출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제 98 조(자문사항) ①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12.09.28)

1. 법 제19조의4 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한 사항(제8호 및 제9호는 제외한다)

2. 유아 지도를 위한 지원 사항과 보건·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3. 지역사회교육에 관한 사항

4.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유치원장이 자문 요청한 사항

② 운영위원회는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을 자문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미리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1. 유치원 홈페이지
2. 학부모 총회
3. 가정통신문
4. 그 밖에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로 정한 방법

③ 법 제19조의4 제1항제7호의 유치원 운영에 관한 건의사항은 위원 1명 이상의 소개를 받아 건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 99 조(운영위원회 간사) 운영위원회 회의록 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유치원장이 추천한 교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 자를 간사로 한다. ('12.09.28)

제 100 조(회의 및 회의소집)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3월과 9월에 소집한다. ('12.09.28)

② 위원 선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임시회는 유치원장이 위원 임기개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소집한다.

③ 임시회 소집은 유치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회의개최 7일전에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정하여 소집공고를 하여야 하며, 이때 회의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④ 회기는 매년 4월 1일부터 익년 3월 31까지로 하되, 회의일수는 연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제 101 조(소위원회 및 자생조직)운영위원회는 안건심사의 효율화를 위하여 급식소위원회를 둔다. 급식소위원회는 학부모위원 1명, 교원위원 1명, 일반 학부모 1명, 외부 전문가 1명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 102 조(안건의 발의 및 처리) ① 안건은 유치원장 또는 재적위원 1/3 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12.09.28)

② 안건 처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처리한다.

제 103 조(서류제출 요구) 운영위원회는 안건의 자문과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유치원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12.09.28)

제 104 조(회의 공개원칙) ① 운영위원회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교육 또는 교권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12.09.28)

② 운영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가정통신문,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하여 회의개최일자,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일반 학부모, 교직원 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 105 조(회의록 작성 등) ① 운영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 진행내용 및 결과와 출석위원의 성명을 기재한 후 유치원장과 위원장이 서명한다.(‘12.09.28)
- ② 위원장은 회의록을 유치원에 비치하여 학부모·교원 및 지역주민 등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운영위원회에서 비공개로 결정한 사항은 공개되는 회의록에 이를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③ 운영위원회는 매 학년도 말에 위원회의 활동상황 보고서를 작성하여 학부모·교직원 및 관할 교육청 등에 배포하고 차기 정기회의 시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 제 106 조(제안·건의사항 처리) 운영위원회로부터 제안·건의를 받은 유치원장은 이를 성실히 검토하여 그 결과를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운영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타 기관의 협조 등 장기간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10일 이내에 중간 회신하여야 한다.(‘12.09.28)
- 제 107 조(자문사항 통보) 운영위원회에서 자문한 사항은 5일 이내에 유치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2.09.28)
- 제 108 조(규정의 개정) 운영위원회는 관련 법령의 개정 등으로 규칙의 개정 사유가 발생하면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당 규칙을 개정할 수 있다.(‘12.09.28)

제 10 장 보 칙

- 제 109 조(공고) 이 법인이 법령과 정관 및 기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할 사항은 부산일보 신문에 공고한다. (‘75.10.29)(‘77.8.26)(‘91.1.17)(‘91.12.27)(‘01.12.11)(‘12.09.28)
- 제 110 조(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세칙으로 정한다. (‘75.10.29)(‘91.12.27)(‘01.12.11)(‘12.09.28)
- 제 111 조(설립당초의 임원) 이 법인의 설립 당초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75.10.29)(‘91.12.27)(‘01.12.11)(‘12.09.28)

직 위	성 명	생년월일	임 기	주 소
이 사 장	박 동 화	26. 9. 22	4년	부산시 서구 남부민동 3가 35
이 사	장 성 만	32. 11. 2	”	부산시 동래구 명륜동 71-15
”	리처드래쉬	28. 11. 26	”	부산시 동래구 명륜동 73
”	박 근 수	33. 12. 29	2년	부산시 서구 동대신동 1가 83
”	권 태 주	23. 9. 5	”	부산시 서구 부민동 3가 8
감 사	전 해 상	10. 11. 2	1년	부산시 서구 동대신동 2가 206
”	이 규 방	26. 1. 17	”	부산시 진구 우암동 189

부 칙

- (1) (시행일) 이 정관은 1981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
- (2) (교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전문대학에 근무하는 교원(학교의 장을 제외한다) 및 일반직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당해학교의 장이 임명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전문대학의 교원의 임용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3) (교원징계에 대한 경과 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교원 징계위원회 및 재심위원회에 계류중인 징계 및 재심청구 사건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4) (학교의 장 임기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임기없이 임명된 전문대학의 장의 임기는 이 정관 시행일로 부터 가산한다.
- (5) (전문대학의 보직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종전의 사립학교법 및 정관에 의하여 임명된 전문대학의 부학장등의 보직은 이 정관에 의하여 당해 학교의 장이 임명한 것으로 본다.
- (6) (인사위원회 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임명된 전문대학의 인사위원회 위원중 이 정관에 의하여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은 이 정관 시행일에 해임된 것으로 본다.
- (7) (일반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임용되어 근무하는 일반직원이 이 정관에 의한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일반직원이 퇴직할 때 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되, 일반직원의 신규임용은 그 초과하는 정원이 있을 때에는 채용하지 못한다.
- (8)(임원 선임기간의 예외) 개정 정관 시행일 이후 임원의 임기만료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우선적으로 선임되는 개방이사 또는 감사는 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결원 발생일로부터 2월 이내에 보충할 수 있다.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1983년 10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198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1) (시행일) 이 정관은 1986년 7월 9일부터 시행한다.
- (2)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재임 중인 이사는 그 임기만료시 까지 이 정관에 의하여 취임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1989년 5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1989년 1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1991년 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2) (교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전문대학에 근무하는 교원(학교의 장을 제외한다) 및 일반직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학교법인이 임명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전문대학 교원의 임용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3) (교원징계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교원징계위원회 및 재심위원회에 계류중인 징계 및 재심청구 사건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4) (인사위원회 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임명된 전문대학의 인사위원회 위원중 이 정관에 의하여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은 이 정관 시행일에 해임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1991년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199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1992년 1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단, 동서공과대학을 동서공과대학교로, 학장을 총장으로, 부학장을 부총장으로 변경하는 규정은 199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교원 및 일반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대학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원(학교의 장은 제외한다) 및 일반직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학교법인 이사장이 임명한 것으로 본다. 다만, 대학교육기관의 교원의 임용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3) (교원징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교원징계위원회 및 재심위원회에 계류중인 징계 및 재심청구사건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4) (학교의 장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임명된 학교의 장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5) (대학의 보직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종전의 사립학교법 및 정관에 의하여 임명된 대학의 보직은 이 정관에 의하여 이사장이 임명한 것으로 본다.
- (6) (인사위원회 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임명된 대학 인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7) (일반직원의 징계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일반직원 징계위원회와 일반직원 재심 위원회에 계류중인 징계 및 재심청구사건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1993년 6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1994년 3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1994년 11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1995년 3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1) (시행일) 이 정관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 (교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동서공과대학교 소속 교직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동서대학교 소속 교직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다만, 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교원의 임용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3) (대학의 장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동서공과대학교의 장은 이 정관에 의하여 동서대학교의 장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다만, 임용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4) (보직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동서공과대학교의 보직자는 이 정관에 의하여 동서대학교의 보직자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다만, 임용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1996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1997년 8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1997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1) (시행일) 이 정관은 199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 (교명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경남전문대학교와 경남전문대학 부속유치원에 근무하는 교직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경남정보대학교와 경남정보대학 부속유치원에 근무하는 것으로 본다.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1999년 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1999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00년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01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9조 제2항의 신규임용 교원의 계약제에 관한 규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02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1) (시행일) 이 정관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 (교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원경대학교 소속 교직원 및 학생은 이 정관에 의하여 동서사이버대학교 소속 교직원 및 학생으로 신분변경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04년 7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05년 6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05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05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의 개정규정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이 정관은 2006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2) (임원 선임기간의 예외) 개정 정관 시행일 이후 임원의 임기만료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우선적으로 선임되는 개방이사 또는 감사는 제20조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결원 발생일로부터 2월 이내에 보충할 수 있다.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07년 1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07년 5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08년 5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08년 12월 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제3조의2, 제34조, 제43조, 제81조 및 87조의 규정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09년 3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10년 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10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10년 8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11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1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기능직 10등급은 승진 등으로 자연 소멸될 때까지 유지한다.

부 칙

(센텀캠퍼스 및 센텀캠퍼스 하부조직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경남정보대학 센텀캠퍼스 설치인가 승인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11년 1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11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12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12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12년 7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12년 8월 0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2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의 정수) 이 정관에 의하여 최초로 선출되는 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인 정수는 제9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2012.9.1. 유아수를 기준으로 한다.

제3조(최초의 위원 임기 개시 및 만료일) 이 규칙에 의하여 최초로 선출된 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인 임기는 제9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2012년 10월 15일 개시되며 2014년 3월 31일에 만료된다.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12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13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13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13년 10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13년 1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14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14년 8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15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15년 8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15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16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16년 8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제50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개정 규정은 2016년 8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17년 8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이 정관은 2018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이 정관은 2018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이 정관은 2018년 8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별 표 1)

1. 법인 일반직원 정원(*14.2.28)

총 계	24 명
일반직(사무) 계	14 명
2 급 (참 여)	1 명
3 급 (부참여)	1 명
4 급 (참 사)	2 명
5 급 (부참사)	2 명
6 급 (주 사)	2 명
7 급 (부주사)	2 명
8 급 (서 기)	2 명
9 급 (부서기)	2 명
일반직(관리운영) 계	8 명
6급(관리운영 주 사)	1 명
7급(관리운영 부주사)	1 명
8급(관리운영 서 기)	2 명
9급(관리운영 부서기)	4 명
고용직(경노무) 계	2 명
고용직(경노무)	2 명

(별 표 2)

2. 동서대학교 일반직원 정원('13.3.27)('14.2.28)('15.1.28)('16.3.28)

총 계	170 명
일반직(사무) 계	95 명
2 급 (참 여)	1 명
3 급 (부참여)	1 명
4 급 (참 사)	2 명
5 급 (부참사)	7 명
6 급 (주 사)	17 명
7 급 (부주사)	21 명
8 급 (서 기)	38 명
9 급 (부서기)	8 명
일반직(기술,사서) 계	13 명
4 급 (사서 참사)	-
(기사 참사)	-
5 급 (사서 부참사)	1 명
(기사 부참사)	1 명
6 급 (사서 주사)	2 명
(기사 주사)	1 명
7 급 (사서 부주서)	3 명
(기사 부주사)	1 명
8 급 (사서 서기)	1 명
(기사 서기)	1 명
9 급 (사서 부서기)	1 명
(기사 부서기)	1 명
일반직(관리운영) 계	27 명
6 급(관리운영 주 사)	3 명
7 급(관리운영 부주사)	5 명
8 급(관리운영 서 기)	10 명
9 급(관리운영 부서기)	9 명
고용직(경노무) 계	35 명
고용직(경노무)	35 명

(별 표 3)

3. 부산디지털대학교 일반직원 정원(*12.3.29)(*13.10.30)(*14.2.28)

총 계	40명
일반직(사무) 계	26명
2 급 (참 여)	1 명
3 급 (부참여)	1 명
4 급 (참 사)	1 명
5 급 (부참사)	1 명
6 급 (주 사)	3 명
7 급 (부주사)	4 명
8 급 (서 기)	5 명
9 급 (부서기)	10 명
일반직(기술) 계	7 명
4 급 (콘텐츠 참 사)	-
5 급 (콘텐츠 부참사)	-
6 급 (콘텐츠 주 사)	-
7 급 (콘텐츠 부주사)	1 명
8 급 (콘텐츠 서 기)	3 명
9 급 (콘텐츠 부서기)	3 명
일반직(관리운영) 계	4 명
7 급(관리운영 부주사)	1 명
9 급(관리운영 부서기)	3 명
고용직(경노무) 계	3 명
고용직(경노무)	3 명

(별 표 4)

4. 경남정보대학교 일반직원 정원(*12.2.28)(*12.3.29)(*14.2.28)(*16.3.28)

총 계	185 명
일반직(사무) 계	77 명
2 급 (참 여)	-
3 급 (부참여)	1 명
4 급 (참 사)	2 명
5 급 (부참사)	8 명
6 급 (주 사)	16 명
7 급 (부주사)	18 명
8 급 (서 기)	20 명
9 급 (부서기)	12 명
일반직(기술/사서) 계	12 명
4 급 (사서 참 사)	-
5 급 (사서 부참사)	1 명
6 급 (사서 주 사)	2 명
7 급 (사서 부주사)	1 명
(기사 부주사)	2 명
8 급 (사서 서 기)	1 명
(기사 서 기)	2 명
9 급 (사서 부서기)	2 명
(기사 부서기)	1 명
일반직(관리운영) 계	26 명
6 급(관리운영 주 사)	3 명
7 급(관리운영 부주사)	3 명
8 급(관리운영 서 기)	8 명
9 급(관리운영 부서기)	12 명
고용직(경노무) 계	70 명
고용직(경노무)	70 명

(별 표 5) 5. **경남정보대학부속유치원 일반직원 정원** (*12.2.28)(*12.3.29)(*14.2.28)

총 계	17 명
일반직(사무) 계	7 명
5 급 (부참사)	1 명
6 급 (주 사)	1 명
7 급 (부주사)	1 명
8 급 (서 기)	2 명
9 급 (부서기)	2 명
일반직(관리운영) 계	7 명
7 급(관리운영 부주사)	1 명
8 급(관리운영 서 기)	1 명
9 급(관리운영 부사사)	5 명
고용직(경노무) 계	3 명
고용직(경노무)	3 명